

중앙선 침범 사고

이 홍 로
(교통안전공단 교수)

1. 머리말

중앙선 침범사고는 마주보는 차와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고로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중앙선 침범을 엄격히 다루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 침범은 30점의 벌점으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최고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0개 특례사항에 포함시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벌칙을 가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은 대부분 치명적인 중대사고로 연결되어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중대한 범규위반이기 때문이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원인을 보면 졸음운전, 난폭운전, 무리한 앞지르기, 과속 등을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운전습관이 체질화된 사람과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로가 항상 과중된 사람에게 흔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선 침범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하여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선 침범의 사례

가.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의 한계는 중앙선 침범 사고의 참혹성과 차체기준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치면 중앙선침범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중앙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나. 중앙선 침범 적용사고

(1) 고의적·의도적 중앙선 침범사고

가) 좌측도로나 건물 등에 가기 위해 회전하며 중앙선 침범한 경우

나)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다)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차선으로 넘어들어오는 경우

라) 후진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행차선으로 넘어들어오는 경우

(2)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

가)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나)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다) 졸다가 뒤늦게 급제동하다가 중앙선 침범

라) 차내 잡담 등 부주의하다가 중앙선 침범

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 침범

바)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시 사고(최근 판례로 인정)

다. 중앙선 침범을 적용치 않는 사고

(1) 1차 사고에 의한 피해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2) 내리막길 정비불량(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중앙선 침범한 사고

(3) 사고피양 등 만부득이한 중앙선 침범 사고

(4) 보행자 피하다가 중앙선 침범한 사고

(5) 중앙선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 넘어서 난 사고

(6)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눈이 덮여 있는 경우 중앙부분 넘어선 사고

3.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1. 장소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티, 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파트 단지내나 군부대내의 사설 중앙선 일반도로에서의 횡단, 유티, 후진
2. 피해자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티, 후진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3. 운전자의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일반적 부주의에 의한 과실

4. 중앙선 침범 사고 유형

가. 황색실선, 점선의 중앙선 침범 회전중 사고

나. 커브길 중앙선 침범 대형차 충돌사고

다. 중앙분리대 넘어가 대형차 충돌사고

라. 주·정차 차량 추월 진행중 보행자 충돌사고

마. 정체차량 앞지르기 하며 진행중 사고

바. 급차선 변경 진입차 피양하다 사고

사. 빗길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사고

아. 핸들 과대조작, 반대편, 도로노면 충돌

자.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사고

차. 가변차선 제1원쪽 차선 침범 사고

카. 후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후진, 유티, 횡단 중 사고

파. 앞지르기 한 후 본 차선 진입중 사고

5. 중앙선 침범 관련 판례

가. 추월하는 버스를 피하려고 급제동한 까닭에 차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사고난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되지 않는다(85도 83 대판).

나.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처벌특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5도 1407 대판).

- 다. 커브길에서 오토바이가 차바퀴는 자기차선에, 왼쪽 손잡이는 중앙선에 10cm 걸친 상태로 운행하다가 중앙선 근접 버스와의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86다카 1073 대판).
- 라. 제한속도내에서 운행자가 사고방지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는데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90도 606 대판).
- 마. 정상진행하는 차를 상대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92다 29245 대판).
- 바. 노퍽이 좁은 1차선 도로에서 행인이 도로변을 통행하여 혼잡한 경우에는 반대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에 주의 운행해야 한다.(90도 2856대판).

6. 맺는 말

이제까지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하지 않는 만부득이한 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알 수 있다. 차체의 일부라도 중앙선에 걸쳐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흔히 앞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이때 안전을 확인한 후 추월을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중앙선은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내사전에 중앙선 침범은 없다는 확실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NFC(National Fire Code) 최신 추록 발간

협회에서는 금년 1월 중 NFC 최신 추록을 발간한다. 금번 발간하는 추록분은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95 가을총회” 및 “96 연차총회”에서 채택된 기준으로서 “액화천연가스(LNG)차량 연료설비 기준”, “개량형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방화기준” 등 신설코드 10개 417쪽(국문기준)과 “미국전기코드”, “청정소화설비 기준” 등 주요 개정코드 30개 3,335쪽(국문기준) 등 총 40개 코드 3,752쪽이다.

협회는 이 추록을 실비로 보급한다.

(문의처) :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 782-8111~25

NFC 추록 목록

□ 신설코드(10개)

코드 No	제 목	쪽수	코드 No	제 목	쪽수
57	LPG 차량연료설비에 대한 기준	44	804	개량형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방화기준	84
115	레이저 방화설비 권장실무	39	1051	임야화재 소방대원의 자격기준	37
268	방사열을 이용한 외벽 어셈블리의 발화성 시험	25	1127	고성능 로켓에 대한 코드	23
269	화재모델링 독성데이터 개발 시험방법	32	1600	재해관리에 대한 권장실무기준	31
560	살균 및 훈증용 산화에틸렌의 저장, 취급 방법	27	8506	열회수 스팀발생기 설비에 대한 기준	75